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83
----------	-----

2023년 6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김원태 의원 외 46명
- 나. 발 의 일 : 2023년 5월 30일
- 다. 회 부 일 : 2023년 6월 5일
- 라. 상 정 일 :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6월 20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원태 의원)

가. 제안이유

- 현장민원 확인·점검에 따른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 중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신고사항을 현장민원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 2) 현장민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 3) 현장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불량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제1항).
- 4) 평가 등을 통해 우수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 5) 시민참여옴부즈만이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27조제7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가) 입법예고(2023. 6. 8. ~ 6. 12.)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조례 개정 입법 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현장민원 살피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장민원의 용어를 정의(안 제2조제5호)하고, 자치구에 현장민원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5조)하며, 현장민원 확인·점검에 따른 시정 조치와 평가를 통한 포상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안 제26조)하고, 시민참여 옴부즈만이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
- 본 개정조례안은 각 25개 자치구 현장민원 살피미(내 지역 지킴이, 시민 불편살피미)의 현장민원 신고실적이 계속해서 감소(2018년 118,406건 → 2022년 24,818건)하고 있고, 자치구간 실적에 차이가 많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지원과 포상의 근거를 신설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옴부즈만 또한 중점감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점감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공정한 평가위원회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 및 포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역할이 커진 만큼 시민참여 옴부즈만의 선정과 관리 측면에서도 더욱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세부내용 검토

1) 현장민원 용어 정의(안 제2조제5호)

- 안 제2조제5호는 현장민원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적용과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1. ~ 4. (생략) <u>〈신설〉</u>	1. ~ 4. (현행과 같음) 5. <u>“현장민원“이란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 중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신고사항을 말한다.</u>

- 동 개정안은 현장민원의 개념을 명확화하여 시민들이 현장민원의 개념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 ‘현장민원이란 120다산콜,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 중 시민의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민원(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의미함.

〈현장민원 개요〉

○ 현장민원 대상 : 시민 불편민원 12개 분야 65개 항목 - 불법주정차, 도로시설물파손, 쓰레기 무단투기, 하수시설, 노상적치물 등			
○ 처리 절차			
현장민원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다산콜 • SNS·모바일앱 등 • 응답소 현장민원 <small>(민원담당관)</small>	민원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3시간) • 24시간 이내 • 확인 후 안내 <small>(시, 자치구)</small>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확인 • 현장민원 살피미 운영실태 확인 <small>(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small>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흡사항 조치 • 자치구 운영사항 실적 확인 <small>(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small>

- 다만, 현장민원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장민원에 대해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접근성을 높여 현장민원 신고 및 처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현장민원 살피미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25조)

- 안 제25조는 조례에 근거가 없어 각 자치구에 현장민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25개 자치구에 현장민원 살피미 관련 물품 등 관련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5조(현장민원 신고활동 지원) 위원회는 자치구 현장민원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에서 관할 구역 시민 생활현장의 불편사항을 점검·신고하는 주민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 지역 지킴이(시민불편살피미)’ 점검·신고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관련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

- 동 개정안을 통해 각 자치구의 현장민원 살피미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 가능해질 것인바, 이를 통해 현장민원 신고실적이 계속해서 감소(2018년 118,406건 → 2022년 24,818건)하는 추세가 완화되고, 현장민원 살피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현장민원 살피미 5개년 신고실적〉

신고실적				
2018	2019	2020	2021	2022
118,406	83,746	51,230	40,896	24,818

- ※ 각 25개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내의 현장민원을 점검·신고하는 ‘현장민원 살피미(내 지역 지킴이, 시민불편살피미)’를 운영중에 있음.

〈자치구별 현장민원 살피미 운영 현황(25개 자치구 총 4,853명)〉

자치구명	구성인원	자치구명	구성인원	자치구명	구성인원	자치구명	구성인원	자치구명	구성인원
종로구	196	동대문구	140	노원구	310	강서구	200	관악구	210
중구	184	중랑구	168	은평구	164	구로구	166	서초구	181
용산구	173	성북구	201	서대문구	140	금천구	110	강남구	524
성동구	222	강북구	142	마포구	160	영등포구	180	송파구	270
광진구	150	도봉구	140	양천구	182	동작구	150	강동구	190

※ 현장민원 업무는 불편민원을 점검·신고하는 살피미 채용 및 관리와 민원사항 처리는 각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고, 현장민원 접수 및 분류는 민원담당관·120다산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민원 살피미 운영실태 확인 및 모니터링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¹⁾에서 실시 중임.

○ 다만, 각 25개 자치구에 예산자원이 이루어질 때에는 필요한 예산, 물품 등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파악하는 노력과 함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자치구 현장민원 살피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3) 현장민원 확인·점검에 따른 시정 조치와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안 제26조)

○ 안 제26조는 현장민원 확인·점검에 따른 시정 조치와 평가를 통한 포상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현장민원 점검·평가 등) ① 위원회는 현장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분기별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이행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공무원 및 우수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46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④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120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 등 시민생활불편민원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현장민원사업 포상금을 편성하여 지급해 왔으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적근거 없이 방침에 의한 지급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단되었는바, 동 조례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동 개정안을 통해 지난 2018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고 조례 근거 하에 우수 기관·공무원·자치구민에게 포상을 제공해 현장민원 살피미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2018응답소 현장 민원사업 포상금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일방적 방침에 의해 지급되고 있음.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기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 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01. 포상금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나.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한 경우 포함)	

- 다만, 우수 현장민원 살피미 선정을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적 평가와 함께 포상 및 표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 주체 확대(안 제21조 및 안 제27조)

- 안 제21조는 감시·평가의 주체를 기존 조례 제21조의 ‘위원(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에서 ‘위원회(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시민참여옴부즈만위원+위원회 감사담당자)’로 수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감시·평가대상) <u>위원</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평가가 <u>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u>한 사업(이하 “감시·평가대상 공공사업”이라 한다)의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 등을 감시·평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공사비가 30억 원 이상의 공사 2. 5억 원 이상의 용역 3.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4. 그 밖에 위탁사무, 보조사업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공공사업 	<p>제21조(감시·평가대상) <u>위원회</u>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평가가 <u>필요하다고 인정</u>한 사업(이하 “감시·평가대상 공공사업”이라 한다)의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 등을 감시·평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공사비가 30억 원 이상의 공사 2. 5억 원 이상의 용역 3.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4. 그 밖에 위탁사무, 보조사업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공공사업

- 동 개정안을 통해 시민감사옴부즈만²⁾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옴부즈만³⁾과 위원회 감사담당자 또한 중점감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2)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4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내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3)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활동과 관련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조사·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 ※ 공공사업 감시평가란 서울시 본청, 사업소 및 투자, 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정원 7명)과 시민참여옴부즈만(정원 100명)이 그 과정을 감시하고 행정과정의 문제를 점검 및 예방하는 활동을 의미함.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관 - 시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 사무위탁기관(위탁사무) 및 보조금 수령기관 ○ 감시·평가 대상 - 30억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 기타 위탁사무, 보조금사업 등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 사업

- ※ 공공사업 감시평가는 발주·입찰·계약이행과정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중점(일반)감시’와 공공사업의 업체선정 및 계약과정에 참관하여 점검하는 ‘참관 활동’으로 나뉨.

〈중점(일반)감시와 참관 활동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감시사업 ○ 대상사업 : 1,657개 사업 / 사업비 6,484,54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174, 용역 501, 물품 336, 위탁 411, 보조금 235 - 본청 861, 본부·사업소 411, 공사·출연기관 385 ○ 선정 현황 : 170개 사업 / 사업비 1,057,25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24, 용역 39, 물품 13, 위탁 59, 보조금 35 -본청 120, 본부·사업소 27, 공사·출연기관 23 ○ 활동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감시 대상사업의 서류검토, 현장확인, 참관 등의 방법으로 활동 □ 일반감시사업 ○ 공공감시 대상사업 중 중점감시 사업 등을 제외한 1,000개 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년 대상 사업 1,657개 중 중점감시, 기존 감시 및 감사사업 제외 후 선정 ○ 활동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기관(부서) 자체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종류별(공사, 용역 등)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 점검대상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사업의 관련 법규 및 지침 적정이행여부 등 2차) 위원회 모니터링 : 일반감시 사업의 약 10% 선정 예정 □ 청렴계약 참관감시 활동 ○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이 요구되는 사업 ○ 참관예상 : 280회 ○ 활동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규모, 사업비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등 사업내용 사전 확인 - 평가회의 진행, 위원 및 참여업체의 보안 통제 적정 여부 확인 - 발주기관의 사업내용 및 평가방법 설명의 충실성 확인 - 평가점수 집계, 평가결과 발표 등 적정성 확인

-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1조4)에 따르면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은 오직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의 직무에 해당하여, 중점(일반)감시의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만 가능하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3항5)에 따라 참여옴부즈만은 참여자로서 ‘참관 활동’만 가능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
 - ※ 이로 인해 중점(일반)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시민감사옴부즈만(정원 7명)으로 제한되어 중점감시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음.
 - ※ 공공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종전 6개 분야 35명에서 10개 분야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6)를 개정('22.12.30.)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중점감시에 활용하지 못하고 참관활동만 하도록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였음.
- 또한, 안 제27조제7항 신설을 통해 시민참여옴부즈만이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참관 활동 뿐만아니라 중점감시 활동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① ~ ⑥ (생략)</p> <p><u>〈신 설〉</u></p>	<p>제27조(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p> <p><u>⑦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제22조 및 제23조의 공공사업 감시·평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u></p>

4)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1조(감시·평가대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업(이하 "감시·평가대상 공공사업"이라 한다)의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 등을 감시·평가한다.

5)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2조(자료의 제출 및 요청 등) ③ 시행기관·부서의 장은 계약업체 선정에 관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의 개최 7일 전에 위원회에 위원의 참관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이나 제25조에 따라 위촉된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6)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활동과 관련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조사·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② 시민참여옴부즈만은 복지정책, 도시안전, 도시계획, 주택정책, 산업경제, 문화관광, 기후환경, 도시교통, 보건의료, 행정자치 등 **10개 분야 총 100명** 이내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장은 참여 분야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전문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시민참여옴부즈만)를 감사(중점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고 이때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담당자로 본다는 조문이 존재하기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중점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는 일은 없어 보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 다만, 동 조례개정안을 통해 시민참여옴부즈만의 권한이 강화되고, 업무 중요도가 커지는 만큼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선정하는 노력과 함께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중점감시를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한 체계 정립도 요구된다고 하겠음.

〈시민참여옴부즈만 구성 : 10개 분야 100명(2023.5.31. 기준)〉

구 분		복지 정책	도시 안전	주택 정책	문화 관광	산업 경제	기후 환경	도시 교통	도시 계획	보건 의료	행정 자치
시 민 참 여 옴 부 즘 만	계 100명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20.8.1. 위촉 10명 1회 연임 (임기'24.7.29.까지)	이00 (복지사)	나00 (기술감사)		차00 (단체)		최00 (행정경험)			오00 (회계사)	
		백00 (복지사)	조00 (건축사)		하00 (법무사)		우00 (세무사)				
					박00 (사민사회)						
	'21.3.16 위촉 15명 1회 연임 (임기'25.3.15.까지)	정00 (복지사)	김00 (건축)	황00 (건축)		신00 (변호사)		권00 (노무사)	서00 (건축)	강00 (간호)	최00 (사민사회)
		유00 (복지사)		진00 (행정경험)		송00 (재정)		한00 (행정경험)	오00 (사민사회)	정00 (변호사)	채00 (재정)

'23.2.15 위촉 68명 (임기 25.2.14.까지)	안00 (법무사)	이00 (전기)	김00 (세무사)	박00 (회계사)	윤00 (세무사)	엄00 (법무사)	이00 (행정경험)	박00 (감사분야)	황00 (행정경험)	이00 (노무사)
	조00 (행정경험)	정00 (공간정보)	권00 (법무사)	노00 (행정경험)	김00 (노무사)	김00 (복지사)	김00 (토목사공)	천00 (변호사)	이00 (복지사)	박00 (행정경험)
김00 (행정경험)	김00 (법무사)	송00 (행정경험)	노00 (행정경험)	함00 (감사분야)	윤00 (복지사)	강00 (법률강의)	김00 (행정경험)	고00 (노무사)	최00 (재판서인)	
곽00 (행정경험)	김00 (건축기술사)	김00 (건축특급 기술사)	정00 (변호사)	하00 (회계사)	최00 (시민사회)	김00 (감사분야)	이00 (건축사)	강00 (유통관리사)	최00 (법무사)	
박00 (복지사)	오00 시민사회)	김00 (감사분야)	전00 (문화예술)	김00 (고용분야)	박00 (토목사공)	박00 (정보통신)	이00 (도시공학)	강00 (재정분야)	최00 (변호사)	
배00 (경찰강의)	오00 (행정경험)	장00 (법무사)	박00 (감사분야)	최00 (복지사)	조00 (건축기사)	김00 (교통)	조00 (건축사)	홍00 (감사분야)	김00 (세무사)	
		장00 (회계사)	손00 (회계사)	김00 (관광)	송00 (신용분석)	전00 (감사분야)	김00 (변호사)	배00 (복지사)	이00 (복지사)	이00 (시민사회)
'23. 5.1. 위촉 7명 (임기 25.4.30.까지)		백00 (상담교사)	유00 (음악치유)	-	김00 (세무사)	오00 (행정경험)	이00 (행정경험)	구00 (행정경험)	-	한00 (노무사)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83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 김원태,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규남, 김길영,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 석,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병운, 이상욱, 이새날, 이종태, 임춘대, 장태용, 정준호, 최민규, 최유희, 최호정, 허 훈, 홍국표 의원(47명)

1. 제안이유

- 현장민원 확인·점검에 따른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 중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신고사항을 현장민원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 나. 현장민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 다. 현장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불량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제1항)
- 라. 평가 등을 통해 우수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 마. 시민참여옴부즈만이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27조제7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현장민원“이란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 중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신고사항을 말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위원회는”으로,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를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8장을 제9장으로 하고,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며, 제8장, 제25조,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현장민원 지원 및 점검·평가 등

제25조(현장민원 신고활동 지원) 위원회는 자치구 현장민원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에서 관할 구역 시민 생활현장의 불편사항을 점검·신고하는 주민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 지역 지킴이(시민불편살피미)’ 점검·신고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관련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현장민원 점검·평가 등) ① 위원회는 현장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분기별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이행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공무원 및 우수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중전의 제25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제22조 및 제23조의 공공사업 감시·평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중전의 제27조) 중 “제25조의 시민참여옴부즈만, 제26조”를 “제27조의 시민참여옴부즈만, 제28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운영 중인 현장민원과 ‘내 지역 지킴이(시민불편살피미)’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신설></p> <p>제21조(감시·평가대상) <u>위원회</u>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u>위원회에서</u> 인정한 사업(이하 “감시·평가대상 공공사업”이라 한다)의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 등을 감시·평가한다.</p> <p>1. ~ 4.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현장민원</u>”이란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 중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신고사항을 말한다.</p> <p>제21조(감시·평가대상) <u>위원회</u>는 ----- ----- ----- <u>필요하다고</u>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8장 <u>현장민원 지원 및 점검·평가 등</u></p> <p>제25조(현장민원 신고활동 지원) <u>위원회</u>는 자치구 현장민원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에서 관할 구역 시민 생활현장의 불편사항을 점검·신고하는 주민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u>내 지역 지킴이(시민불편살피미)</u>’ 점검·신고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관련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p>

<신 설>

제8장 그 밖의 사항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① ~ ⑥ (생략)

<신 설>

제26조 (생략)

제27조(수당 등 지급) 제17조의 심의
위원, 제25조의 시민참여옴부즈만,
제26조에 따라 감사 등에 참여하는
시민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 제30조 (생략)

제26조(현장민원 점검·평가 등) ①

위원회는 현장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분기별 1회 이상 확
인·점검하고 이행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
과에 따라 우수 공무원 및 우수 기
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서 포상할 수 있다.

제9장 그 밖의 사항

제27조(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6항에 따라 제22조 및 제23조의 공
공사업 감시·평가 업무를 독립적
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제29조(수당 등 지급) -----
--- 제27조의 시민참여옴부즈만,
제28조-----

--.

제30조 ~ 제32조 (현행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와 같음)